

# 2023년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2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강태욱,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25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대행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61건(안건번호 제2023-206160호~제2023-20860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06160호~206205호(순번 1번~46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본인 감상 글, 풍경 영상 및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06206호~206220호(순번 47번~61번)는 블로그에 뮤직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06221호~206224호(순번 62번~65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 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06225호~206235호(순번 66번~76번)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52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최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67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5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회의 부분인 9쪽 내지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2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66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4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상 글, 영상,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블로그 및 카페에 스트리밍, 다운로드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임. 총 50개 게시물임.

(순번 25번 및 4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상 글, 풍경 영상, 사진, 인물 사진 등을 본문에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본인 감상 글, 풍경 영상, 사진 등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은 인정되나, 음악 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물을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28조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판례의 태도 및 앞서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음악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감상, 분석 등 직접 작성한 글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함께 게시하여 나름의 창작성 구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달리 볼 필요성이 있음.

순번 1번~46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을 전송하면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 감상 글, 풍경 영상 및 사진 등

을 함께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물이 삭제·전송 중단이 될 경우 게시자로서는 기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개인의 표현 영역까지 전부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순번 1번~46번은 본인이 작성한 글, 촬영 영상 등과 함께 음악저작물의 전체분량을 전송중이지만,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46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7번~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23건임.  
(순번 47번 및 55번, 6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현장 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며,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해 전송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현장공연 녹음·녹화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파일이나, 권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 OST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 개수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

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이므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기준으로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전송이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47번~6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번~6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의 자막파일(smi)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이며, 총 31건임.

(순번 6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 등)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대본(어문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판단하고 있음.

정리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다수의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어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금일 상정된 순번 62번~65번의 경우 게시물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지?
- 김민영 주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광고 배너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영리를 추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게시자가 해당 자막파일이 불법 복제된 영상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라는 점 및 자막파일 전송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침해의 고의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심의일 현재 기준 92건이 넘는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이므로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판단하고 있음.
- D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막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최신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막파일을 제공하는 게시물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B, C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62번~65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6번~76번은 실명 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방송물을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31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순번 66번 내지 76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66번~7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77번~244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3,526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 출판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순번 77번~2442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7번~244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06160호~206205호(순번 1번~46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206206호~206220호(순번 47번~6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206221호~206224호(순번 62번~65번)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206225

호~206235호(순번 66번~7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06236호~208601호(순번 77번~244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1.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강태욱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